

캘리포니아 의회법안(AB, Assembly Bill) 109 에 의거한 교도소 및 구치소 재배치법

2014 년 4 월, 자료 #CM42.03

1. 교도소 및 구치소 재배치법이란 무엇입니까?

이 법안은 폭력적이거나 중대한 범죄, 또는 성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주 교도소 대신에 카운티 구치소에서 복역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카운티는 구치소 복역 대신에 커뮤니티에 근거한 대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카운티는 주 교도소에서 석방된 특정인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¹

2. 의회 법안(AB, Assembly Bill) 109 란 무엇입니까?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재배치를 시행하게 한 주의 입법입니다. 2011 년에 주지사가 교도소의 과잉 수용, 비용 및 재범을 감축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3. AB 109 은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까?

¹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캘리포니아 교정사회복지국(CDCR,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2011 공공 안전 재배치법” (“2011 Public Safety Realignment”) 자료표 (12/19/13)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주소:

<http://www.cdcr.ca.gov/realignment/docs/realignment-fact-sheet.pdf>.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정사회복지국(CDCR,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에 따르면 수감자의 23.1%가 “정신적인 질병”²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9 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구치소에 있는 사람의 33%가 “정신건강상의 사건을 제기 중”³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교도소 보다는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 년 6 월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2 천명 이상의 범죄자가 주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석방 후 커뮤니티 사후 지도(P RCS, Post Release Community Supervision)로 보내졌습니다.⁴

4. 카운티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기획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커뮤니티 교화 파트너십(CCP, Community Corrections Partnership)⁵이라고 합니다. 각 카운티는 시행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CCP 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위원회는 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카운티 사회복지서비스부, 정신건강, 알코올 및 약물 남용 프로그램의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할애하는 지원금의 액수와 자원면에서 다양한 카운티 플랜이 있습니다. 많은 카운티 플랜이, 이용가능한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상세한 내용까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카운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Humboldt, Kern, Madera, Plumas.⁶

² Ashly Nikkole Davis,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재배치의 효과” (“The Effect of Realignment on Mentally Ill Offenders”) (2012 년 3 월), p. 16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law.stanford.edu/sites/default/files/child-page/183091/doc/slspublic/Davis_AB109_And_Mentally_Ill_Offenders.pdf

³ 위와 동일

⁴ 이들 중 80% 이상은 일반인 수준이었습니다. 2% 이하만이 강화 외래환자 프로그램(EOP, Enhanced Outpatient Program)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주 전체 정신건강 석방후 커뮤니티 사후지도 프로그램 대시보드 (2012 년 6 월)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mhda.org/go/portals/0/cmhda%20files/committees/forensics/1207_forensics/prcs_line_2012_dashboard_\(7-23-12\).pdf](http://www.cmhda.org/go/portals/0/cmhda%20files/committees/forensics/1207_forensics/prcs_line_2012_dashboard_(7-23-12).pdf)

⁵ 형법 § 1230; 또한, 위의 각주 1 에 있는, CDCR 의 “2011 공공 안전 재배치법” (“2011 Public Safety Realignment”) 자료표 (12/19/13)도 참조하십시오.

⁶ McCray, A., McCann Newhall, K., Greenlick Snyder, J., “카운티 의회법 109 시행 계획 비교” (“Comparison of County AB 109 Implementation Plans”), (2012 년 1 월, 검토를 위한 사본

5. 확인된 필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a.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든 합당한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⁷
- b. 지역 교화소, 정신 및 행동 건강부, 법원, 보호관찰관, 범죄 변호사들 사이에는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⁸
- c. 시설에서 석방된 후와 커뮤니티에 다시 들어가는 시간 사이에 반드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되어야 합니다;⁹
- d. 정신건강 법원에서는 기관간의 관계를 육성하고, 재범율을 낮추며, 혼란 동시발생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¹⁰
- e. 정신건강 법원은 형사사법제도로부터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재배치시킬 수 있습니다;¹¹ 또한
- f. 효과적인 보살핌의 범주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¹²

6.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까?

2012)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주소: http://www.law.stanford.edu/sites/default/files/child-page/183091/doc/slspublic/Realigning_the_Revolving_Door.pdf

⁷ DRC 자료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합당한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귀하의 헌법상의 권리” (“Your Constitutional Right to Adequate Mental Health Care in Jails or Prisons”)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CM2801.pdf>

⁸ 위의 각주 2 에 있는 Ashly Nikkole Davis,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재배치의 효과” (“The Effect of Realignment on Mentally Ill Offenders”) (2012 3 월), p. 22 를 참조하십시오.

⁹ 위의 자료. 22-23

¹⁰ 위의 자료. 24.

¹¹ 위의 자료.

¹² 위의 자료. 27;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청(SAMHSA,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행동건강 장애가 있는 성인 수감자를 위한 증거 기반 시행 및 프로그램” (“A Checklist for Implementing Evidence-Based practices and Programs Justics-Involved Adults with Behavioral Health Disorders”) 을 참조하십시오:

<http://gainscenter.samhsa.gov/cms-assets/documents/73659-994452.ebpchecklistfinal.pdf>

그렇습니다. 재배치법에 의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AB 109 는 차량 면허비와 주 판매세 수익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DCR 에 따르면, “재배치 첫 해에는 회계년도 전반에 4 억달러가 카운티에 제공되었으며, 지난 해에는 8 억 5 천만달러, 그리고 2013-2014 년에는 10 억달러가 제공되었습니다.”¹³

이에 덧붙여, 정신건강서비스법(MHSA, Mental Health Services Act)에 의하면, “카운티는 정신질환 범법자 범죄 감축 보조 프로그램(Mentally Ill Offender Crime Reduction Grant Program)에 따라 만든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주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거나 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사람을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¹⁴ MHSA 지원금은 주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거나 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사람을 위해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¹⁵ 하지만, “카운티는 소년원 그리고/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석방을 주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서비스를 위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¹⁶

또한, 상원의원 스타인버그(Steinberg)는 최근에 정신질환 범법자 범죄 감축 보조(MIOCRG, Mentally Ill Offender Crime Reduction Grant) 프로그램을 재시행하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hsoac.ca.gov/MHSOAC_Publications/docs/PressReleases/2013/PR_SteinbergAnnouncesOffenderReductionProgram_121913.pdf

7. 필요 충족을 확실시 하는 일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 기획 절차를 찾아가 보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a. 지역의 정신건강국 또는 위원회;

¹³ 위의 각주 1 에 있는 CDCR, “2011 공공 안전 재배치법” (“2011 Public Safety Realignment”) 자료표 (12/19/13)를 참조하십시오.

¹⁴ 복지 및 시설 규정 § 5813.5(f); 홈베이스(HomeBase) / 노숙문제를 위한 법률 및 기술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결책, “캘리포니아 10 개년 장기 노숙문제 실천계획, 자료집: 석방 및 전이 계획” (“Drafting California’s Ten-Year Chronic Homelessness Action Plan, Resources Binder: Discharge & Transition Planning”) (2006 년 6 월 21-23).

¹⁵ 캘리포니아주 법규집 9 편 제 3610(f)조 (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¹⁶ 캘리포니아주 법규집 9 편 제 3610(g)조.

- b. 지역의 MHSA 기획 절차;
- c. 카운티 커뮤니티 교화 파트너십; 또는
- d. 카운티 감리 위원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읽으신 후,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귀하의 의견을 전해 주십시오.

영어: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4/index.html>

스페인어: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5/index.html>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다양한 재정지원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단체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캘리포니아 정신건강서비스국 (CaMHSA, California Mental Health Services Authority)은 개인과 가족, 커뮤니티의 정신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는 카운티 정부의 기관입니다. CaMHSA 가 시행하는 예방 및 조기중재 프로그램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정신건강서비스법제 63(Mental Health Services Act [Prop 63])호에 의거하여 카운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제 63 호는 이전에 취약계층에 속했던 사람과 캘리포니아의 모든 다양한 커뮤니티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자금과 기반을 제공합니다.



WELLNESS • RECOVERY • RESILIENCE

